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20.10.21.	상담유형	[] 방문 [o] 전화 [] 기타()
------	-------------	------	-------------------------

상 담 요 청 자	성명	[REDACTED]	생년월일	[REDACTED]
	소속/직위(직급)	[REDACTED]	연락처	[REDACTED]

상담 내용

[상담분야: 외부강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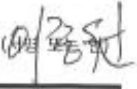
- 팀장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H로부터 법무사 선정심의원으로 참석을 요청받음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여부 및 방법 (참석수당 240천원/일)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 경우 강의·강연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을 받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기고 등이 전부 포함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이 요청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우리공사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참석 후 10일 이내에 감사실로 공문 발송하기 바람

2020년 10월 21 일

행동강령책임관

대인 이종원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20.08.04.	상담유형	[] 방문 [o] 전화 [] 기타()
------	-------------	------	-------------------------

상 담 요 청 자	성명	[REDACTED]	생년월일	[REDACTED]
	소속/직위(직급)	[REDACTED]	연락처	[REDACTED]

상담 내용

[상담분야: 외부강의등]

- 기존의 개발사업본부장께서 시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향후 시장께서 업무와 관련한 심의 등 발생 시 외부강의 신고 방법

상담 결과

- 기존과 같이 감사실로 우리공사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문 발송바람
- 청탁금지법 및 우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사전신고에서 참석 후 10일 이내 사후신고도 가능하며, 사례금의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가능함
- 사례금의 상한은 기존과 동일: 40만원/회(1시간 초과 시 60만원)

2020년 8월 04일

행동강령책임관

대) 이종원 (서명) 